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 8月 13日(火) 11時 20分

場 所 本會議長

議事日程

1.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2.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4.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5. 特別委員會 委員 構成에 따른 委員 推薦의 件
6. 特別委員會 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附議된 案件

1.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運營委員長 提出) 1 面
2.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 2 面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安哲柱議員 外 7人 發議) 2 面
4.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朴鍾植議員 外 7人 發議) 2 面
5. 特別委員會 委員 構成에 따른 委員 推薦의 件 (議長 提議) 4 面
6. 特別委員會 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各 特別委員長 提出) 7 面

(11時 20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방청석에서도 편안한 자세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種相 무더운 날씨에도 안녕하십니까?事務局長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2회 종로구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은 安哲柱議員 外 7人의 議員이 발의하신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과 朴鍾植議員 外 7人으로부터 제출된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제출

된 의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安哲柱議員 外 7人으로부터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은 구·동청사를 비롯하여 구의 주요 행정재산의 소유권 보존 등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안이며, 朴鍾植議員 外 7人의 議員으로부터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은 우리 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환경개발의 횡포와 관련한 전반적인 정화조 청소 행정에 대한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李種相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1.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期 決定의 件 (運營委員長 提出)

(11時 2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종로구의 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1996년 8월 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參照)

議事日程(案)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1996. 8. 13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월 13일 (화) 11: 00	○임시회 개최식 1. 제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요구의 건 4.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요구의 건 5.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추천의 건 6.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폐 회	제 1차 본회의 (본회의장) (특별위원회별위원장, 간사선출)

2. 第62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議
錄 著名 議員 選出의 件

(11時 26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동 순위에 따라 洪承台議員과 羅在岩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安哲柱議員 外 7人 發議)

4.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 調査權
發動 要求의 件 (朴鍾植議員 外 7人 發議)

(11時 26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자이신 安哲柱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哲柱議員 安哲柱議員입니다. 이십만삼천 종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金憲中 議長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로구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모범 의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오늘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도 지방의회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해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라는 질책이자 계도활동이며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결집된 의사표시입니다. 198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시 이전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을 시유, 구유재산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종로구에 인계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누를 범해 왔습니다. 실례로 종로구청사 재산권만 보더라도 소유는 이전등기 및 관련 근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8년간이나 방치해오다 1996년 3월 22일 본 의원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시작된 끈질긴 자료 추적의 결과로 구유재산이라는 확고한 증빙서류를 찾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동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에 등기 촉탁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종로구 구유재산은 구청 재산, 관련 공무원의 개인 재산이 아닌 이십만삼천 구민의 재산입니다. 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종로구청장의 책임이지만 구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종로구의회가 앞장서서 구민의 재산을 찾는 것만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행정사무 조사를 통해 종로구 관내에 산재해 있는 2,602필지의 시유재산이 '시 구유재산 조정 지침'에 의거 소유상태가 적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과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950필지에 대한 관리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궁극적으로는 재산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게 될 것이며 열악한 종로구의 재정 확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의 날씨인데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구유재산 조사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종로구구유재산조사에관한행정사무
조사권발동요구의건

의안 번호	446
----------	-----

발의년월일 : 1996. 8. 5
발 의 자 : 안철주의원 외 7인

1. 주 문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재산 인수·인계 후 공부정리 미비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 간의 재산 소유권 분쟁을 차단하고 향후 재산

관리에 적정을 촉구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안이유

1988년 5월 1일 이전에는 서울특별시의 모든 행정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의 소유로 하고 구청장은 일반적 관리만을 담당하던 것을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실시로 모든 행정재산을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소유로 구분 인수·인계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구유재산을 공부 정리 등의 미비로 소유권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구 소유 재산임에도 서울특별시로 환원 요구하는 등을 감안하여 재산 관리에 미비된 점을 조사하고, 확고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 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議長 金憲中 安哲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朴鍾植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鍾植議員 朴鍾植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폭염에도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더 불어서 치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7인으로 발의된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에게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던 바 그동안 대행업소에서 적은 용량의 분뇨를 수거함에도 건축대장에 허가난 용량을 수거한 것처럼 허위로 요구하여 약 십오륙년 간에 걸쳐서 1억8천만원 상당의 요금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1996년 6월 4일 동대문경

찰서에 입건되는 등의 상당한 문제가 돌출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종로구청화조대행업에관한행정사무

조사권발동요구의 건

의안 번호	446
----------	-----

발의년월일 : 1996. 8. 5

발 의 자 : 박종식의원 외 7인

1. 주 문

우리 구에서 허가하여 관내 정화조 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환경개발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불법 편취사례가 발생한 바 정화조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실사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을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정화조 청소 등 청소업무는 원래 구청장 고유업무이나 예외적으로 관계법에서 허가받은 업자에게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정화조 청소분야는 주식회사 환경개발에서 하도록 허가하여 관내 수거대상 23,000여 개소에 대한 정화조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음

위 허가받은 환경개발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화조 청소는 청소후 수거용량대로 소정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거용량을 허위로 요구하여 약 2억8천만원 상당의 요금을 불법 편취하여 '96. 6. 4 동대문경찰서에 입건되는 등 정화조 대행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심층분석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관련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대 상

· 종로구 청소과 등

4. 근거법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 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

○議長 金憲中 朴鍾植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조사케 하고 보고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特別委員會 委員 構成에 따른 委員 推薦의 件(議長 提議)

(11時 35分)

○議長 金憲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特別委員會 委員 構成에 따른 委員 推薦의 件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천 위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安哲柱議員, 宣相善議員, 李炳文議員, 玄壽漢議員, 沈載得議員, 李炯述議員, 羅在岩議員, 金以煥議員, 金正大議員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의 의원을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朴鍾植議員, 鄭泰淳議員, 吳錦南議員, 千相旭議員, 玄孝善議員, 李萬魯議員, 丁昌熙議員, 朴文培議員, 洪起瑞議員 이상 9명의 의원을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 위원회별 특별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조사계획 승인 요구서 작업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羅在岩議員 말씀하십시오.

○羅在岩議員 羅在岩議員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두 발의한 게 전부다 다 조사권 발동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동이라는 언어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종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조사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과 범위 등을 기재해서 발의한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발동이라고 하는 어휘의 좀 강한 의미의 이것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조사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를 아주 강하게 넣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그리고 구유재산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93년도에 이미 조사를 한 번 한 적도 있고 지금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이것 역시 저희들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 측에서 그간에 얼마나 감사도 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한 부족한 점 이런 것을 스스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차제에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사 요구에 맞도록 해서 저희들 생각과 일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발동이라고 하는 구태여 이런 언어를 여기에다 삽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의의입니다. 여기 말씀에 대해서 양 발의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憲中 여기 발동이라고 하는 두 자의 강한 언어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

는데 발동이라는 처음에 이 문안을 작성할 때 사실은 좀 잘못되어 가지고서 이게 행정상 용어로서,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행정상 용어로서 「지자체 조사의 일반 이론」 이런 사항에서 '행정사무조사 개요'해서 이 해설집 2조에 '조사 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羅在岩議員 議席에서 -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해도 되지 않느냐)

○議長 金憲中 그 외에 다시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朴文培議員 말씀하십시오.

○朴文培議員 朴文培議員입니다. 말북이 지났습니다마는 더위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의원님들! 모두 피서에 다녀오셨는지, 좋은 피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 부채질하는 방법, 찬물에 발을 담그는 방법, 그늘 밑을 찾아가는 방법, 독서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열을 내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려 화내지 않는 방법도 좋은 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화나는 일이 있으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 화를 안내는 방법도 좋은 피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두 건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위한 발의가 된줄 압니다. 그러나 전자의 구유재산의 특별위원회는 본 의원으로서의 지당한 발의 사항으로 찬성을 하며, 후자의 정화조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議長 金憲中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내려가세요.

○朴文培議員 좀 더 들어보세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議長 金憲中 내려가세요. 이 동문서답 격인 이 질의에 대해서

○朴文培議員 좀더 들어보세요.

○議長 金憲中 안돼요.

○朴文培議員 왜냐하면 朴鍾植議員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더 들어봤으면 해서 통과하기 전에

(「통과했잖아. 다 끝났잖아」하는 議員 있음)

○議長 金憲中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5分 會議中止)

(14時 18分 繼續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연장 의원이신 玄壽漢議員! 나오셔서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玄壽漢입니다. 그동안 저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또 장마 피해가 속출되는 가운데에도 지역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고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시는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업무에 해박하시고 지식을 겸비하고 대인관계에도 폭넓으신 安哲柱議員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玄壽漢 임시委員長!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哲柱委員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

員長 安哲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고 오늘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의했던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 자치제가 실시된 1988년 5월 1일 이후 자치구에 모든 행정재산이 합법적으로 종로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부 재산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모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유재산의 관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로구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존속 기간 동안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마칩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간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宣相善議員님을 幹事로 만장일치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憲中 安哲柱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宣相善 幹事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구유재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安哲柱 區有財産 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모시고 미력이지만 보탬이 되는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까 생각합니다. 議員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폭염 속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도록 하느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있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宣相善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연장 의원이신 千相旭議員님!

나오셔서 위원장선임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千相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정화조 업무에 관심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丁昌熙議員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千相旭 임시 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丁昌熙委員長!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事 보고를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長 丁昌熙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丁昌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나 정화조 대행업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제안해 주신 朴鍾植議員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한쪽으로는 어깨가 무거우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청소 행정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대행업을 실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청소 업무에 주민 불편 신고는 날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3년도에 시정 촉구토록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으나 현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주식회사 환경개발의 독점 계약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부재의 현상과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는 주민 불편 사항을 가증시키고 있는지 모든 정보와 기능을 총동원하여 이 기회에 원인을 발본색원하여 규명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간에 덕망이 매우 높으시고 폭넓은 대인관계를 갖고 계시는 朴文培議員님이 본 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金憲中 丁昌熙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朴文培議員!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培議員 금번 정화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朴文培議員 인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불초한 본 의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해서 말썽많은 청소업무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끔히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憲中 朴文培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6. 特別委員會 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各 特別委員長 提出)

(14時 28分)

○議長 金憲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安哲柱委員長! 나오셔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鍾路區 區有財産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長 安哲柱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安哲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실시될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19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의 구유재산 소유 현황과 관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산 관리의 적정성과 재산권을 확보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하고 재산 관리 업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6년 8월 14일부터 1996년 9월 1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1996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의 범위 및 방법은 구유재산의 토지 건물 소유 실태 및 관리 상태, 구유재산의 증감사항 등에 대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서류 검증 및 현장 조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 목 적

1988년 5월 1일 구 자치제가 실시 되면서 구유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의 소유상태와 관리상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통해 재산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제고하기 위함.

□ 조사의 범위

-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현황
- 구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 관리 운영 현황
- 소관 부서별 재산보유 현황
- 구유재산 공부정리 현황
- 기 타

□ 조사 기간 및 일정

- 기간 : '96. 8. 14 ~ '96. 9. 13
- 일정
 - '96. 8. 14 ~ '96. 9. 1 자료준비
 - '96. 9. 2 구유재산 현황청취
 - '96. 9. 2 ~ '96. 9. 7 관련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 '96. 9. 9 ~ '96. 9. 10 질의 및 답변
 - '96. 9. 11 ~ '96. 9. 13 보고서 작성
 - '96. 9. 13 이후 임시회의시 본회의 보고

□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위원장 : 안철주
- 간 사 : 선상선
- 위 원 : 이병문, 현수환, 심재득, 이형술, 오금남, 김이환, 김정대
- 보조직원: 전문위원 윤주채, 의정계장 이영재, 김경동, 남승범, 서은미, 정은희, 민홍기

□ 조사 요령

- 조사 방법
 -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 현지 확인 또는 관련서류 조사
- 조사 항목

분 야	항 목	내 용
제 도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규칙	○ 구유재산의 총괄 현황 ○ 구유재산의 관리체계 및 책임한계
재 산 관 리	구유재산	○ 구유재산(토지, 건물)소유실태 조사 ○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 구유재산의 증·감 현황 실태조사 (취득, 용도폐지, 관리전환, 기부채납등) ○ 구유재산 중 위탁허가한 재산현황 및 관리상태 ○ 구유재산 중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내역 ○ 구유재산 소유권 등기 현황
기 타		
제 목 : 서류제출 요구서		1. 제출서류 : 별첨 2. 제출서류 부수 : 15부 3. 제출일시 : 1996. 9. 2 4.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목록

연번	서류제출명	비고
1	내무부 시유재산조정 지침('87. 5. 18) 사본	
2	서울시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서 사본	
3	2번에 의한 시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4	2번에 의한 구 소유재산 목록(집계표)	
5	2번에 의한 구유재산 인수 목록(집계표)	
6	구유재산 관련부서 공무원 역임현황 ('87. 5. 18 ~ '96. 8. 12)	
7	종로구 관내 국·공유지 실태조사표 사본	
8	'96 종로구 개별공시지가 대장 사본	
9	종로구 관내 20m이상 도로현황도	

제 목 :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2. 보고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3. 보고내용 : 소관업무 사항

제 목 : 관계공무원(참고인)출석·답변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대상 : 관계공무원 및 해당업체
2. 출석일시 : 계획서 참조
3. 출석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 목 : 현장확인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일시 : 계획서 참조
2. 준비장소 : 구청광장 앞
3. 준비사항 : 차량 2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議長 金憲中 安哲柱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安哲柱 委員長이 보고한 조사계획서는 원안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丁昌熙 委員長! 나오셔서 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鍾路區 淨化槽 代行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長 丁昌熙 特別委員長 丁昌熙입니다. 존경하는 金憲中 議長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관내 정화조 업체가 수수료를 불법으로 편취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중점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8월 14일부터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1996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해당부서 및 환경개발 업체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서류 검증 및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종로구 정화조대행업에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 목 적

관내 정화조 청소업(주-환경개발)의 횡포(바가지요금, 독점체제)와 관련 제도적, 실제적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조사하고 제도상, 운영상 미비점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의 범위

- 종로구 청소행정 중 정화조 청소업 관련사항 - ○ 관련조례의 미비점 등에 대한 조사 ○ 인허가 및 허가업체의 감독 적정성 ○ 수거량과 허가업체수의 적정여부 ○ 민원에 대한 적정한 행정처분 여부 ○ 기 타 □ 조사 기간 및 일정 ○ 기간 : '96. 8. 14 ~ '96. 9. 13 ○ 일정 - '96. 8. 14 ~ '96. 9. 1 자료준비 - '96. 9. 2 해당국, 해당업체 현황청취 - '96. 9. 2 ~ '96. 9. 7 관련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 '96. 9. 9 ~ '96. 9. 10 질의 및 답변		- '96. 9. 11 ~ '96. 9. 13 보고서 작성 - '96. 9. 13 이후 임시회의시 본회의 보고 □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 위원장 : 정창희 · 간 사 : 박문배 · 위 원 : 박종식, 정태순, 나재암, 천상욱, 현효선, 이만로, 홍기서 · 보조직원: 전문위원 장소수, 의사계장, 박종수, 이윤식, 전 용, 구상미, 유연숙, 김세영, 최기노 □ 조사 요령 ○ 조사 방법 - 서류검증 및 질의 - 해당업체 현지확인 및 관련서류조사 ○ 조사 항목
분 야	항 목	내 용
제 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독점적, 특혜적 규정에 대한 대응태세 (제10조, 제17조) ○벌칙조항으로 허가취소 조항은 청소공백이 우려되어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벌금규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태세
인 허가	허가 절차	○연장허가, 계약 등의 타당 여부 ○신규허가 신청에 대한 대응자세가 타당하였는가 ○허가조건대로 감독에 철저하였는가
	허가업체(현장확인 및 증인신문)	○허가조건대로 차고지 장비·인원 등을 확보하고 있는가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문제는 없는가 ○구청의 제반지시 이행상태는 어떠한가 ○동대문경찰서 혐의사실에 대한 대응태세와 이에 대한 자체 재발방지 대책은
민 원 발 생	발생민원에 대한 적정 대응	○민원접수체계는 적정한가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조사가 신속하고 적절한가 ○발생민원에 상당한 행정처분을 하였는가
제 목 : 서류제출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 별첨 2. 제출서류 부수 : 15부 3. 제출일시 : 1996. 9. 2 4. 제출장소 : 구의회사무국

서 류 제 출 목 록

연번	서 류 제 출 명	주 관 부 서	비 고
1	환경개발(주)현황:임직원 현황, 보수지급현황, 장비, 차고지등	청 소 과	
2	분뇨관련 50인조 이상의 현황: 연변, 소재지, 성명, 인조수, 청소량, 청소일등	"	
3	분뇨관련 행정처분 현황 ('95~현재)	"	
4	분뇨관련 민원접수대장 사본 ('95~현재)	"	
5	분뇨관련 민원접수공문 사본 ('95~현재)	"	
6	'96. 9월중 정화조 청소 실시대상 및 계획	"	
7	정화조 시설이 규칙 제12조, 제14조 및 제41조의 기준에 위반하여 정화조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한 내용 ('94. 1. 1~현재)	"	
8	정화조 청소 작업일지 사본 ('95. 1. 1~현재)	"	
9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 미이행자 명단 및 과태료 부과내용 - 조례제4조1항 ('95. 1. 1~현재)	"	
10	허가건물중 50인조 이상의 정화조 설치 현황 ('94. 1. 1~현재)	건축과, 주택과	
11	건축 연면적 1,600㎡ 이상 건물현황 및 동 건물의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준공현황 ('94. 1. 1~현재)	건축과, 주택과	

제 목 : 행정사무처리 현황의 보고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일시 : 계획서 참조
2. 보고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3. 보고내용 : 소관업무 사항

제 목 : 관계공무원(참고인)출석·답변 요구서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대상 : 관계공무원 및 해당업체
2. 출석일시 : 계획서 참조
3. 출석장소 : 각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 목 : 현장확인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장비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일시 : 계획서 참조
2. 준비장소 : 구청광장 앞

3. 준비사항 : 차량 2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議長 金憲中 丁昌熙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丁昌熙 委員長이 보고한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와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조사계획서 승인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로구 구유재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종로구 정화조 대행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 조사 완료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남아서 의원직을 수행해 주신 데 머리가 수그러집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방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선포

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노인정, 유아원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이번 기회에 특위에서 모든 것을 시정토록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時 35分 散會)

○出席議員 21人

金憲中	安哲柱	李炳文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玄孝善	沈載得	李萬魯	鄭泰淳
李炯述	洪承台	羅在岩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洪起瑞	康來奎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出席 關係公務員

總 務 局 長	吳 炳 漢
財 務 局 長	金 誠 泰
市 民 局 長	金 賢 植
都 市 整 備 局 長	趙 學 來
建 設 局 長	吳 鍾 錫
保 健 所 長	李 星 世